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6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선교 · 김종양
이상희 · 송석준 · 신성범
김정재 · 김용태 · 박성훈
곽규택 · 유용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”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,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.

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,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, 어려운 한자어, 외래어·외국어,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 및 제5

조제1항 단서 등).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함유하는”을 “포함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공작물의”를 “인공구조물의”로 한다.

제36조제5항 중 “매득금(賣得金)은”을 “취득한 금액은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제1호 중 “소지(沼地)”를 “늪이나 연못”으로, “묘우(廟宇)”를 “사당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6호 중 “지정(池井)”을 “연못과 우물”로, “전기공작물의”를 “전기 인공구조물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공작물의”를 “인공구조물의”로 한다.

제71조제4호 중 “지정(池井)”을 “연못과 우물”로, “전기공작물의”를 “전기 인공구조물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石), 사문석(蛇紋石), 수정(水晶), 연옥(軟玉), 고령토[도석(陶石), 벤토나이트, 산성백토(酸性白土), 와목점토(蛙目粘土), 목절점토(木節粘土) 및 반토혈암(礬土頁岩)을 포함한다], 석회석[백운석(白雲石) 및 규회석(硅灰石)을 포함한다], 사금(砂金), 규석, 규사, 우라늄광, 리튬광, 카드뮴광, 토륨광, 베릴륨광, 탄탈륨광, 니오비움광, 지르코늄광,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[세륨, 란타넘, 이트륨, 프라세오디뮴, 네오디뮴, 프로메튬, 사마륨, 유로퓸, 가돌리늄, 테르븀, 디스프로슘, 홀뮴, 에르븀, 툴륨, 이터븀, 루테튬, 스칸듐을 한 유하는 토석을 말한다]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, 그 물질의 폐광(廢鑛) 또는 광재(鑛滓: 제련하고 난 찌꺼기)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.

2. ~ 4. (생략)

포함하

는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분리된 광물의 귀속) ①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(權原)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, 공작물의 설치,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,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.

② (생략)

제36조(취소와 저당권) ① ~ ④ (생략)

⑤ 경매에 따른 매득금(賣得金)은 경매의 비용,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, 광업 종업원의 임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한다.

제5조(분리된 광물의 귀속) ① --

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취소와 저당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취득한 금액은

-----.

제44조(채굴의 제한) ①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.

1. 철도·궤도(軌道)·도로·수도·운하·항만·하천·호(湖)·소지(沼地)·관개(灌溉)시설·배수시설·묘우(廟宇)·교회·사찰의 경내지(境內地)·고적지(古蹟地)·건축물,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

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70조(토지 사용의 목적)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·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철도·궤도·도로·운하·배수로·지정(池井) 또는 전기 공작물의 개설

제44조(채굴의 제한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높이
나 연못-----
-----사당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0조(토지 사용의 목적)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-----연못과 우물-----전기 인공
구조물의-----
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<u>공작물</u> 의 설치	8. ----- <u>인공</u> <u>구조물의</u> -----
제71조(토지 수용의 목적)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·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.	제71조(토지 수용의 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철도·궤도·도로·운하·배수로· <u>지정(池井)</u> 또는 <u>전기</u> <u>공작물의</u> 개설	4. ----- - <u>연못과 우물</u> ----- <u>전기</u> <u>인공</u> <u>구조물의</u> -----